

2024

법인결산과 세무조정

INSIGHT UP

법인세 개정 및 실무이슈

HIT THE SPOT SERIES ①

개정세법 PART 1



YOUR BEST HRD PARTNER
씨에프오아카데미
www.cfoi.kr



HIT THE SPOT SERIES ①

개정세법 PART 1

1 법인세 분야

【법인세법·시행령】

01 신탁세제 합리화

(법인세법 제5조, 소득세법 제2조의3,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)

〈개정취지〉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신탁소득 과세방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원칙) 수익자 과세 • (예외)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수탁자 과세) ①~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① ①~③에 해당하는 경우 <p>*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(목적신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「신탁법」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(사업신탁) <p>② 수익자가 2 이상일 것</p> <p>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하지 않을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위탁자 과세) ①~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	<p>□ 과세체계 정비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p>①~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</p> <p>① (좌 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삭 제〉</p> <p>③ (좌 동)</p> <p>- (좌 동)</p>

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	〈삭 제〉
②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	〈삭 제〉
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	③ (좌 동)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

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)

〈개정취지〉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원칙) 과세 제외 • (예외) ①~④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②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③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(합병차익 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평가이익 -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(1% 재평가적립금 등) - 이익잉여금 ④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(분할차익 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평가이익 - 분할감자차익(1% 재평가적립금 등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/div> <p>⑤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*의 주식 발행액면초과금**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** 발행가액 - 액면가액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

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

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(법인세법 제18조)

〈개정취지〉 과세형평성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(주식의 장부가액 한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예외) ①~④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②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진입하는 금액 제외 ③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 법인의 다음 금액(합병차익 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평가이익 -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(1% 재평가적립금 등) - 이익잉여금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④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(분할차익 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평가이익 - 분할감자차익(1% 재평가적립금 등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3% 재평가적립금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3% 재평가적립금</p> </div> <p>⑤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

- ③ 합병·분할차익에 포함된 3%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
 ((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)

〈개정취지〉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합병차익에 포함된 3%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병차익(①-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잉여금(3% 재평가 적립금 제외)의 합계액 ②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□ 분할차익에 포함된 3%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한도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할차익(①-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잉여금(3% 재평가적립금 제외)의 감소액 ②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□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% 재평가적립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3%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• 이익잉여금, 의제배당과세대상 자본잉여금 • 의제배당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□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

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

-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)

〈개정취지〉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〈신 설〉	□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 방법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: 종전 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 차감

0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

(법인세법 제8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)

〈개정취지〉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 (의제 배당소득) 	(좌 동)
□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 회사,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·면세·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	
〈추 가〉	□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(좌 동) ④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⑤ 3% 재평가적립금(합병·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)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04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

(법인세법 제19193호 부칙 제15조의2)

〈개정취지〉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한)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(5년 의무적용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고기한)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] (좌 동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(예외)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*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'24.1.1.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 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] (좌 동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(특례)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05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

(법인세법 제76조의2, 같은 법 부칙 제10조)

〈개정취지〉 신고 제도 개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기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] 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

06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

(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4항, 제120조의22, 제120조의26)

〈개정취지〉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증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·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<p>□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</p> <p>①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= (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× 조정연결세율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: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-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: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: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조정 연결세율 : 조정 연결산출세액 ÷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</div> <p>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= (연결산출세액 - 조정 연결산출세액) × $\frac{\text{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}^*}{\text{연결집단 전체 결손금}^*}$</p> <p>*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</p> <p>③ 결손금 공제·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: ①의 금액 + ②의 금액</p> <p>□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</p> <p>①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= (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× 조정 연결세율)</p>

②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

$$= (\text{조정 연결산출세액}) \times \frac{\text{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}^*}{\text{연결집단 전체 결손금}^*}$$

*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

□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

-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
-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

<적용시기 및 적용례>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07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

(법인세법 제113조)

<개정취지> 납세 편의 제고

<개정내용>

종 전	개 정
<p>□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</p> <p>※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 간 합병 시 •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	<p>□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•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

08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)

<개정취지>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

<개정내용>

종 전	개 정
□ 연결대상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 범위	□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

-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
 -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
 - 매출채권, 대여금 등 채권
 -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
 - 토지와 건축물

〈추 가〉

〕 (좌 동)

- 외국법인의 주식등*
 - * 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09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

(법인세법 제120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3)

〈개정취지〉 조문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	□ 제출기한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분기별 거래명세서)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• (연간 거래집계표) 연도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

10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)

〈개정취지〉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축산업(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)·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	□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축산업(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) 외의 농업

-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*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- * 1) 국민연금사업
- 2) 특별법 및 인·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
- 3)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

- 연금 및 공제업
 - 연금업 및 공제업

1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)

〈개정취지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원칙)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% • (예외)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- 희생계획·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- 유동화전문회사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등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특법 §74 중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* <p>* [조특법 §74①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학교법인·산학협력단 등 (2) 사회복지법인 (3) 국립대학병원 등 (7)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(8)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% 이상인 「공익법인법」상 공익법인 (9) 공무원연금공단 등 <p>[조특법 §74④]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

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(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, 제19조)

〈개정취지〉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 회사의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〈추 가〉 	<p>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 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
<p>□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 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〈추 가〉 	<p>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 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

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등 손익인식 방법
(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,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3항)

〈개정취지〉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원칙) 실제 보험료·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	<p>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 기준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

- (예외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·비용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에 손익인식

〈신 설〉

-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

□ 전환손실* 손익인식 기준

-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
- *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

③ 구상채권상각총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

(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, 제9조의2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)

〈개정취지〉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구상채권상각총당금 손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• (손금산입) 총당금적립금의 Max[1%, 구상채권발생률] • (귀속시기) 구상채권상각총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	<p>□ 적용대상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<p>〈삭 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(좌 동)
<p>□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구상 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<p>〈신 설〉</p>	<p>〈삭 제〉</p> <p>□ 종전 총당금적립금 세무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총당금 적립금 간 차액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 산입

13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금액 손금·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의2호,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)

〈개정취지〉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판매한 상품·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액·부대비용 • 인건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 경비에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등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·양육 지원금* <p>*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</p>

14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)

〈개정취지〉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·중견기업 • 직·간접적으로 100%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 •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% 미만인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국법인 • (좌 등) • (좌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*의 근로 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는 경우 <p>*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15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, 별표)

〈개정취지〉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□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대상) 다음 법률 또는 외국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「가맹사업법」</td> <td>「신용정보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개인정보 보호법」</td> <td>「제조물 책임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</td> <td>「파견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기간제법」</td> <td>「하도급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대리점법」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/3 	「가맹사업법」	「신용정보법」	「개인정보 보호법」	「제조물 책임법」	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	「파견법」	「기간제법」	「하도급법」	「대리점법」		<p>□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좌 동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「남녀고용평등법」</td> <td>「상표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농수산물품질법」</td> <td>「식물신품종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대규모유통업법」</td> <td>「실용신안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상생협력법」</td> <td>「자동차관리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공정거래법」</td> <td>「중대재해처벌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디자인보호법」</td> <td>「축산계열화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부정경쟁방지법」</td> <td>「특허법」</td> </tr> <tr> <td>「산업기술보호법」</td> <td>「환경보건법」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left: 20px;"> $= \text{손금불산입액} = A \times \frac{B-1}{B}$ <p>A : 지급한 손해배상금 B :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</p> </div>	「남녀고용평등법」	「상표법」	「농수산물품질법」	「식물신품종법」	「대규모유통업법」	「실용신안법」	「상생협력법」	「자동차관리법」	「공정거래법」	「중대재해처벌법」	「디자인보호법」	「축산계열화법」	「부정경쟁방지법」	「특허법」	「산업기술보호법」	「환경보건법」
「가맹사업법」	「신용정보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개인정보 보호법」	「제조물 책임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	「파견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기간제법」	「하도급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대리점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남녀고용평등법」	「상표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농수산물품질법」	「식물신품종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대규모유통업법」	「실용신안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상생협력법」	「자동차관리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공정거래법」	「중대재해처벌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디자인보호법」	「축산계열화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부정경쟁방지법」	「특허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산업기술보호법」	「환경보건법」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

16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)

〈개정취지〉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·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 2018.2.13.전에 인·허가 받은 학술연 구·장 학·기술진흥·문화·예술·환경보호운동단체 - ② 2018.2.13.전에 舊 「법인세법 시행 규칙」 별 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• (지정방식·인정기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0.12.31.까지는 별도 지정절차 없이 지정기 부금단체로 인정 - 20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·고시를 통해 공익 법인으로 인정 - ①, ②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2. 3.31.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·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 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	<p>□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</p>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p>⌈ (좌 동)</p> <p>⌋</p> <p>⌈ (좌 동)</p> <p>⌋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, ②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3. 12.31. 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·고시 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

17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)

〈개정취지〉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전용보험가입 (추 가) 	<p>□ 손금산입 요건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* *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차의무 대상 차량인 경우(2024. 1. 1. 시행)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

18 실험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

(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)

〈개정취지〉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약환급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업협동조합, 무역보험공사, 새마을 금고, 건설공제조합, 중소기업협동 조합, 신용협동조합의 보험·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• 보험금지급준비금 • 계약자배당준비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-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실험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</p>

19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)

〈개정취지〉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 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 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」, 「전기 사업법」, 「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」, 「철도공사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산업재해보상 보험법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대상법률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</p>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20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)

〈개정취지〉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손익의 귀속사업연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품 등 판매 : 인도일 •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: 대금청산일, 소유권 이전등기일, 인도일,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• 건설등 용역 제공 : 작업진행률 기준 * (예외)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,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,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수익·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-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

〈적용시기 및 적용례〉 2024.2.29.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

21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)

〈개정취지〉 법령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자산의 취득가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입가액에 취득세·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• 제조·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·노무비·운임 등의 합계액 • 「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」 상 무상 할당 받은 배출권은 '0'원 •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	<p>□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」 및 「대기관리 권역법」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'0'원 • (좌 동)

22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, 제120조의4)

〈개정취지〉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배당을 받은 주주등·수익자가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 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첨부</p>

23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)

〈개정취지〉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□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증자합병*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<p>*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: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+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-현금 등 지급액</p>

2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)

〈개정취지〉 법령 명확화

〈개정내용〉

종 전	개 정
<p>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) 현금 영수증가맹점 •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자 성명 -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-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	<p>□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) 현금영 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•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- (좌 동)